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나107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나10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가단5046017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 피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18. 8. 31.

판결 선고 2018. 9.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가단504601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화성시 D 전 287m²에 관하여 2016. 7.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47,0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화성시 D 전 28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1) 과 피고 B 사이에 2016. 7.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9. 8. 접수 제154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A에게 같은 등기소 2016. 8. 25. 접수 제1450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을 무역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4. 2.부터 2017. 4. 1.까지로 정해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에 기해 2015. 4. 8. 우리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로 1억 원을 변제기한을 2016. 4. 1.로 정해 차용하였고, 그 후 변제기한이 2017. 4. 1.로 연장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8. 22.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6간회합1014호)을 하여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기한을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그러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12.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90,725,650원(= 원금 90,000,000원 + 이자 725,6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A은 2016. 7.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26,1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8. 25.

접수 제145058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2016. 8. 3.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8. 접수 제154114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A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채권이 아직 발생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7. 22. 당시 이미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당시 감정인 J의 시가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화성시장, 안산시 상록구청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39,032,000원이던 이 사건 토지와 당시 매매가가 최저 3억 7,000만 원에서 최고 4억 750만 원 정도이던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205동 1001호2)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외에도 우리은행에 113,350,000원, 기업은행에 89,428,000원, 기술보증기금에 873,368,000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6,652,000원 정도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은 피고 B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하겠다(설령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우선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시세가 39,03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 26,100,000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 B은 악의로 추정되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하겠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A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매매대금 또한 전액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과의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그래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해 A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관련 법리 사해행위로 목적물을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 3) 판단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7. 22. 이 사건 토지를 (주)오케이컨설팅부동산중개의 중개를 통해 A으로부터 26,1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2016. 8. 17.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 B은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1,100,000원은 2016. 8. 24. (주)세명레저 명의로 A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 B은 당시 시가 39,032,000원이던 이 사건 토지를 시가의 약 67% 정도인 26,1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13일만인 2016. 8. 3.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위와 같이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을 지나 잔금을 지급하거나 (주)세명레저 명의로 잔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또한 명확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을나 제6, 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피고 B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A에 대하여 90,725,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구상금채권을 가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가 47,068,000원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과 피고 B이 2016. 7. 22.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명의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에게 이전되었고,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으므로(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원상회복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 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나) 그러므로 나아가 가액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 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한데, 당시 감정인 J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2018. 7. 5.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7,06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인

2018. 8. 31.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위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7,0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전득한 자도 악의로 추정되므로, 전득자인 피고 C 역시 일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하겠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C는, 자신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으로부터 정당한 가격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를 마친 것이며, A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전득자인 피고 C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6. 8. 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5,000,000원은 2016. 8. 4.에, 2차 중도금 15,000,000원은 2016. 8. 10.에, 잔금 15,000,000원은 2016. 8. 31.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통장에서 2016. 6. 3.과 2016. 6. 4. 및 2016. 6. 7. 각 5,000,000원씩을, 2016. 6. 10. 및 2016. 8. 24. 각 10,000,000원씩을, 2016. 8. 31. 5,000,000원을 각 (주)세명레저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은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39,032,000원을 상회하는 점, 매매대금 지급일자가 계약서의 지급일자와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위 매매계약 전에 A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C는 위 매매계약 당시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 C와 피고 B이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없이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일부 매매대금이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가 악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C의 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주현

판사남준우

판사이진희

- 1)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 2) 안산시 상록구 H 821호는 1의 소유로서 A의 적극재산이 아니다.